

의안번호	2216312
의 퇴 인	김미애의원
회 답 일	2026.6.17.
추 계 번호	26D0451
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정의)	전환기 청년이란 취업 준비기간, 퇴직 이후 재취업 준비기간,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등 취업 및 재취업의 과정에서 소득이 감소하는 기간 중에 있는 청년을 말함	
2	안 제22조의2(전환기 청년 특별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기 청년에게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재진입할 수 있도록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	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조(정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2조의2(전환기 청년 특별지원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취업 준비기간, 퇴직 이후 재취업 준비기간,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등 취업 및 재취업의 과정에서 소득이 감소하는 기간 중에 있는 청년을 전환기 청년으로 규정하고(안 제3조제8호)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환기 청년에게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재진입할 수 있도록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(안 제22조의2제1항) 규정하는 내용임
- 개정안에 따라 전환기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전환

기 청년에 대한 비용 지원의 방식, 규모, 기간, 지원대상 청년의 수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, 개정안 제22조의2제2항에서 이러한 지원의 범위, 기준,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- 참고로,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비(월세)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,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

[표 1] 청년층 대상 주거비(월세) 지원사업: 2025년

	청년 월세 특별지원	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	주거안정장학금 지원
소 관	국토교통부	국토교통부	교육부
법적근거	주거기본법 제15조, 청년기본법 제20조	주거급여법 제7조	
소득요건	가구소득 중위 100% 이하 & 본인소득 중위 60% 이하	중위 47% 이하	저소득(기초·차상위)
지원내용	월 최대 20만원	1인가구 기준 16.4~33만원	월 최대 20만원
예 산 액	77,737백만원	23,116백만원	34,435백만원
세부사업	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(1034-311)	주거급여지원 (1034-302)	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(2645-300)

자료: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의 예산설명자료(Ⅱ-1)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